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3.12.5>

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[ ] 고 용 [ ] 고용관계종료 [ ] 인장등록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
	주소/체류지: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

중개업자 종별	[ ]법인 [ ]공인중개사 [ ]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

중개사무소	명칭	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

	구 분	고용·고용관계종료일	성 명	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	주 소	자격증 발급 시·도 (공인중개사)	자격증 번호 (공인중개사)
고용인 인적사항							

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 제15조·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·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(등록인장 인)

※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.

※ 신 고 안 내

신고하는 곳	시·군·구	담당부서 (전화번호)	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( )
		수수료	없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